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7.

복지문화 위원회
전 문 위 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7.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남현주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2023. 7. 7.(금)

○ 회부일자: 2023. 7. 7.(금)

○ 검토기간: 2023. 7. 10.(월) ~ 7. 14.(금)

2.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안 제1조~안 제3조)

나.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명시(안 제4조)

다. 전동보조기기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달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용편의와 안전운행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2년 12월 현재 달서구의 등록장애인은 28,435명으로 대구시 등록장애인의 22.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서 2021년 9월까지 대구시 전동보조기기 지원은 4,034대(전동휠체어 1,421대, 전동스쿠터 2,613대)로 행정기관 1,829대 중 달서구 577대로 31.55%를 차지하고 있음.

2022년 등록장애인 현황

구분	합계	심한장애	심하지않은장애
전국	2,652,860	983,928	1,668,932
대구광역시	127,611	46,310	81,301
달서구	28,435	10,728	17,707

출처: KOSIS 시군구별, 장애정도별, 등록장애인수

대구시 전동보조기기 지원 현황(2016년에서 2021년 9월까지)

구분	행정기관								그외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대구지방보훈청	건강보험공단
현황	60	244	111	131	235	325	577	146	42	2163

출처: 대구시 자료

○ 이처럼 전동보조기기 이용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용환경은 열악하여 도로교통공단(2023년 4월 20일)에 따르면 전동보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4명 중 3명이 교통사고 위험상황을 경험하는 등[1] 전동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마련이 필요함.

○ 또한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으로 2022년 12월 현재 대구시 공공기관 등 169개소와 지하철역 91개소 등 모두 260개소에 급속충

1) 도로교통공단(2023년 4월 20일)에서 전동휠체어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 4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73.8%(315명)가 최근 5년간 실질적인 교통사고 위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달서구는 관내 공공기관 등 17개소와 지하철 1호선 7개소, 2호선 10개소 등 모두 34개소에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음.

2022년 대구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

구분	공공기관 등								지하철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1호선	2호선	3호선
현황	20	20	20	17	27	34	17	14	32	29	30

출처: 대구시 홈페이지, 2022년 12월 기준

○ 그러나 급속충전기 이용을 위한 안내와 관리가 충분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관리와 홍보가 필요한 상황임.[2)]

○ 이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명시한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목적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2) 미디어생활, "장애인 공공시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이용 어렵다". 2021년 10월 12일자 신문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

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할 수 있는 대상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개발활동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